

2021 생활세금 시리즈

- 국세청 -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

01. 기초 세금상식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

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용단(200만 원, m당 10만 원 고품인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1.1.이후), 고급모피 등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 (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7.1.이후), 담배(2015.1.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사 업 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 가 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	4. 1. ~ 4. 25.	1. 1. ~ 3. 31.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 1. ~ 7. 25.	4. 1. ~ 6. 30.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 1. ~ 10. 25.	7. 1. ~ 9.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 1. ~ 1. 25.	10. 1. ~ 12. 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	1기 확정	7. 1. ~ 7. 25.	1. 1. ~ 6. 30.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 1. ~ 1. 25.	7. 1. ~ 12. 31.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간이)	확정신고	다음해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 1.~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 1.~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or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익월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물품 제조·수입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 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 2.10.		1. 1.~ 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다음해 1. 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2. 사업자등록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① 광업
 -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 ④ 부동산매매업
 - 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⑧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 ⑨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⑩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⑪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 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액 합계가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 가치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0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04. 사업자 유형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 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 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 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 부 세 금	소득세	법인세
세 율 구 조	6 ~ 45% (8단계)	10 ~ 25% (4단계)
납 세 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 장 의 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원칙)	복식부기
외 부 감 사 제 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법인 등

05. 확정일자 신청안내

▶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100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06. 민원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신청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 제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3.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6. 단체직인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폐업신고

1. (휴)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청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 및 휴폐업신고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민원증명 신청

1. 민원신청서
2.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3. 위임하는 경우,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기타의 경우 위임자 본인

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 민원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관련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

07.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 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총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 (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제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 유무
서비스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공인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공인인증서(로그인)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공인인증서 필요

- 사업자와 세금신고 -

01.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개인사업자
		4. 1.~6. 30	7. 1~7. 25.	법인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 1. 1.~1. 25.	개인사업자
		10. 1.~12. 31.	다음해 1. 1.~1. 25.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 ·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되고,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 1.~12. 31.	다음해 1. 1.~1. 25.

※ 다만, 7. 1.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 2021.7.1. 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2) 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02. 소득세 신고 · 납부

◎ 소득세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 30.(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20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	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 ① 무신고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 6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 와
 - ②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를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4,800 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text{①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text{②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당 무신고 시 40%, 6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03.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

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백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천 4백만원

• 적용 예 :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2021. 5.(2020년 귀속) 신고 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 6백만 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임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일자리안정자금}) \times (1 - \text{단순경비율})$$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 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04.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직전연도 12. 1. ~ 12. 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 1. ~ 6. 30.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 봉사료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05.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 ※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45%)되나,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90%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4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06.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의 제조와 수입, 특정한 장소에 입장,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은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등과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각 과세장소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과세물품 : 제조장(수입은 보세구역)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과세장소 : 입장인원
-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고객에게 받은 총금액-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 정원이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는 5%(2021. 6. 30.까지는 3.5%, 다만 세율인하 혜택은 100만원까지만 적용)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단,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는 비과세하며, 전기자동차는 2020년까지 3백만원 한도로 세금을 감면합니다.
 - 일정 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1대에 한하여 5백만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합니다.
 - 개별소비세 이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장소 입장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마장은 1,000원(장외발매소는 2,000원)
-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원
- 골프장은 12,000원(제주도 및 위기지역 2020~2021년 3,000원)
- 경륜장·경정장은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 카지노는 50,000원(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는 6,300원), 외국인은 2,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유흥 주점·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1월 중 매출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00\text{원} \div 1.1 = 90,909,090\text{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90\text{원} \div 1.13 = 80,450,522\text{원}$
- 개별소비세 : $80,450,522\text{원} \times 10\% = 8,045,052\text{원}$
- 교육세 : $8,045,052\text{원} \times 30\% = 2,413,515\text{원}$
- 부가가치세 : $90,909,090\text{원} \times 10\% = 9,090,900\text{원}$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개별소비세의 30%

07. 폐업신고

▶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자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기	신고 납부 대상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1.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7.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8. 가산세

▶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그 신고 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 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아래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수입금액×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②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과소신고 · 초과환급 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10% ②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5/1,000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 부정행위인 경우 : 위 일반적인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아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래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①, 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4/10,000 ③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①+②+③)	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②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③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0%

◎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 ①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25% × 경과일수
 - ②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5%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③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로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5/100,000
 -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 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 · 초과환급가산세	9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과소신고 · 초과환급가산세	10%

기한 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상기 가산세 이외에도 개별세법에 그 밖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봉급생활자와 세금 -

0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

• 계산절차

연 간 급 여 액
(-) 비 과 세 소 득
총 급 여 액
(-) 근 로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 정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 급) 할 세 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당 15만원

• 세율(2021년 귀속)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

• 특별소득공제

구 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기타 :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원 <p>*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p>

• 기타 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액
개인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2. 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 15%(2020. 3. 1. ~ 6. 30. 사용분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2020. 3. 1. ~ 6. 30. 사용분 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2020. 3. 1. ~ 6. 30. 사용분 8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총급여액</th> <th style="width: 50%;">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td> </tr> <tr> <td>7천만 원 ~ 1억2천만 원</td> <td>250만원</td> </tr> <tr> <td>1억2천만 원 초과</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2천만 원	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 1억2천만 원	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저축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등

구 분	세액공제대상 및 세액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부터는 7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1~2명인 경우 :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총 10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특별 세액 공제	<p>보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보장정보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정보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p>의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
	<p>교육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p>기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기부금		- 지정기부금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②) 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 } ② (㉠, ㉡ 중 min)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12%)

02. 의료비 세액공제제도

◎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 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text{총급여액} = \text{연간 급여액} - \text{비과세 소득}$$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700만원 한도)

$$\text{의료비총액} - (\text{총급여액} \times 3\%) = \text{공제대상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 인	직 계 비 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 계산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 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합계 : 350만 원
--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04. 저축·보험·증권과세금

◎ 저축과 세금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 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 축 명	가 입 대 상	불 입 요 건	적 용 기 한
생계형저축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원 이하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원 이하	2022. 12. 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240만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22.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원 이내 계약기간 7년(1회에 한해 3년 이내에 서 연장 가능)	2015.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	---	-------------------------------

- * 2015년 가입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 : 20세 이상
 - 적용기한 : 2014. 12. 31.까지 가입분
-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저 축 명	공 제 금 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총 10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 세대주 등)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의 40%(연간 24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종합합산소득이 없는 자)

◎ 보험과 세금

-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비과세 보험차익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

계약 기준일	계약 내용	제외 사유
2003. 12. 31. 이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아닐 것
2004. 1. 1. 이후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2013. 2. 15. 이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 계약 1. 계약자의 총저축성보험의 합계가 2억 원 이하인 보험계약으로 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17. 3. 31까지 체결하는 계약, 2017. 4. 1.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2.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으로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의 균등 조건 등의 요건 충족,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는 1인당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일 것) 3. 종신행 연금보험(아래 요건 모두 충족) ● 계약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 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 중도 해지 불가)	

●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보험금

보험사고의 발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다음 금액은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 증여재산 :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총불입한 보험료)

◎ 증권과 세금

● 배당소득을 받거나 증권 거래 시에는 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됩니다.

- 배당소득 :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15.4%

- 증권거래 :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상장주식 0.3%, 코스닥등록 주식 0.45%)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22~33% (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05. 퇴직금과 세금

◎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 과 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보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법 § 14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법 § 55)

1) 종전(2015년 12월 31일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①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5 \times \text{기본세율}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②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frac{\text{퇴직소득과세표준}}{\text{근속연수}}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text{근속연수}$$

- 소득세법 부칙(11611호, 2013. 1. 1.)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 12. 31. 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2016년 1월 1일 이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text{환산급여}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div \text{근속연수} \times 12 \} - \text{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 (8백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천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천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5천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② 퇴직소득 산출세액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 (\text{퇴직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div 12 \} \times \text{근속연수}$$

③ 경과조치(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 2014. 12. 23.)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text{퇴직소득 산출세액} = (\text{㉠})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 (\text{㉡}) \times \text{연도별 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60%	40%	20%	0%
㉡ 2016. 1. 1. 이후 계산방법	40%	60%	80%	100%

다. 세율(소법 §55)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 200만 원 이하	6%	-
4천 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8천 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300원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06. 연금과 세금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각종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6 ~ 45 %)					
산출세액					
(-) 각종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납부 (환급) 할 세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 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목이 아닌 다른 가맹점명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원 초과분은 25/100)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 부동산과 세금 -

01.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일정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합니다.

-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2개월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0%	0.1%	전용면적 85㎡초과 시 0.2% 과세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2%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 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非조정지역	1~3%	1~3%	8%	12%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세 : 8% 및 12% 중과분 모두 0.4% • 농어촌특별세 :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021. 12. 31.까지 취득세 감면 * 취득가액 1.5억 원 이하 시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시 50% 경감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02.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	요	경	비	등					
양	도	차	익							
(-)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양	도	소	득							
(-)	소	득	감	면	대	상	소	득	금	액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감	면	세	액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자산	구분	2017.1.1.~	2018.1.1.~	2018.4.1.~	2021.6.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¹⁾²⁾		
		2년 미만	40% ¹⁾³⁾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 4) (조정대상지역 내)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조정대상지역 구분없음)
1세대 2주택 ⁷⁾ (조합원입주권 포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은 10% 가산)		기본세율(단, 조정대상지역은 10% 가산)

	1세대 3주택 ⁷⁾ (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5)은 10% 가산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은 20% 가산)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은 30% 가산)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기본세율+10% ⁶⁾		
	미등기양도자산	70%			

- 1)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한다.
-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40%(2021. 6. 1.이후 70%)
-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2021. 6. 1.이후 60%)
- 4)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 5) 2017. 8. 3. ~ 2018. 3. 31.까지의 양도분만 10% 가산됨
- 6)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는 추가 10% 가산되나, 2020. 3. 현재 지정지역 없음
- 7) 2021. 1. 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소득세법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천200만 원 이하	6%	-
4천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8천800만 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원
5억 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세율적용 방법

- 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1년 2개월 보유한 비사업용토지를 2019년 중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 a, b 중 큰 금액인 20,0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a.	50,000,000	40% (2년 미만)	-	20,000,000
b.	50,000,000	34% (비사업용 토지)	5,220,000	11,780,000

- ② 1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일반세율 적용한 세액과 각 자산별 세율을 적용한 세출세액의 합계액 중 큰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

☞ a, b 중 큰 금액인 216,600,000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비교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액
a	과세표준 합계	600,000,000	42%	35,400,000	216,600,000
b	산출세액 합계				205,200,000
	비사업용토지	110,000,000	45%	14,900,000	34,600,000
	비사업용아님	490,000,000	40%	25,400,000	170,600,000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ext{양도차익} = \text{실지양도가액} - \text{실지취득가액} - \text{필요경비}(\text{①}+\text{②}+\text{③})$$

-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
- 실지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 ① 취득 시 부대비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 ※ 2016. 2. 17. 이후의 자본적지출액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말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019. 1. 1. 이후)

1. 토지·건물

공제 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토지 · 건물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는 적용하지 않다가, 2017년 1월부터 적용함

2. 1세대 1주택

구 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공제율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1세대 1주택: 최고 80% 까지 적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 (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8%)인 경우 20%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가 2020. 12. 31.(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22. 12. 31.)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50% 를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0. 7. 11.이후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청한 경우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할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5% 이하) 제한 요건을 준수할 것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 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 2%,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적 298㎡이하 and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이 149㎡ 이하

〈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 양도소득기본공제

- 다음의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며, 동일한 소득별 자산을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 공제 제외 : 미등기양도자산

03. 자경농지와 세금

◎ 자경농지의 양도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결한 시·군·구내의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봄)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

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 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¹⁾ 수입금액 기준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1)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제조업 등 1.5억, 부동산임대업 0.75억

☞ 2017년 2월 7일 이후 양도분부터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봅니다.

- 2020년 과세기간 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 원(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 1년간 한도 :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 1억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2억 원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 ☞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 읍·면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자경농지의 대토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토감면 가능

- a.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 b.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시 2년 내)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양도
- c.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나중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 d.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한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 e.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며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에서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 *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4년간 경작한 것으로 봄
 -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 *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백만 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2017. 2. 7.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봄
- f.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감면한도액

- ☞ 1년간 한도 :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지대토만 있으면 1억 원, 8년 자경과 함께 있으면 2억 원 2016년 1월 1일 이후 농지대토감면과 8년 자경감면을 합하여 1억 원
- ☞ 5년간 한도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2억 원(대토감면만 있을 경우 5년간 1억 원)

◎ 자경농지의 증여

-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자경농민 :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결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2)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 자경농지의 교환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합니다.

04. 재산의 상속과 세금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공과금 · 채무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 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상속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감정평가 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부동산)비상장주식 신용평가 전문기관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 원 한도
 -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 500만 원 한도
- 상속공제
 - ① 기초공제 : 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 ②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 ③ 그 밖의 인적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④ 일괄공제
 - 「①기초공제+③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 20% (2억원 한도)
-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이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미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공제할 수 없음.
-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는 1주택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⑦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음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 ※ 사전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05. 재산의 증여와 세금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하나,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자 (실제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의 계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증 여 재 산
(-) 증 여 재 산 공 제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함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3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 원 한도)

-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 하는 경우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100억원 한도)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5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는 4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06. 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 < [(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07.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창업 자금의 범위는?

-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창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 또는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창	업	자	금
(-) 과세 특례 적용 공제액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 창업자금 : 30억원 한도
-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 한도
- ▶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원
- ▶ 세율 : 10%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3%) 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5)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08. 기업의 사전상속제도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기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100 억 원 한도) 을 자녀 1 인이 증여받는 경우
 -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조특법(§ 30의6)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기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 기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말하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2014. 1. 1. 이후부터)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나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 수증자의 요건은?

- 수증자는 기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승계 증여세 계산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 2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가	업	승	계	주	식	가	액
(-)	과	세	특	레	적	용	공
과	세	표	준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 주가가액 : 100억원 한도
- ▶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 : 5억원
- ▶ 세율 : 1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용한 세금정보 -

01.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란?

- 납세자 여러분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한 국세청의 전문 상담서비스 기관입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세무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국세조사관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국세상담센터」 설치 배경 및 서비스 개선

- 국세청은 납세자 여러분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종전 국세청, 지방청, 세무서로 분산 되어 있던 세무상담 창구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이용안내

- 국세상담센터에서 전화,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및 세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납부,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증명발급, 세법상담, 탈세, 각종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126번									
1(홈택스 상담)							2	3	4
1	2	3	4	5	6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납부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증명발급	세법상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세금고충상담)	탈세 등 각종제보

-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126번 이용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담

-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

- 국세청은 세정서비스와 관련한 고충, 불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VOC 시스템 이용방법
 - 세정서비스에 대한 고충, 불만, 건의, 칭찬 등을 전화(국번없이 126)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VOC 처리결과 회신
 - 제기된 VOC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휴대폰 SMS와 E-mail을 통해 알려드리고 처리결과 회신과 함께 E-mail 또는 전화로 신뢰성과 신속성에 대한 고객평가를 받습니다.
 - 제기되어 처리한 VOC는 더 나은 세정서비스 구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02. 홈택스 이용 안내

◎ 홈택스(Hometax)란?

-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국세 종합 서비스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 : www.hometax.go.kr

◎ 홈택스는 이렇게 편리합니다.

-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자료 조회 등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나 은행 등에 가지 않고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민원증명 등을 직접 출력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원가입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방법

회원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통신사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아이디/비밀번호, 생체인증(지문, 얼굴)으로 로그인하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누리집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회원가입

- ▷ (개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가입
- ▷ (법인·세무대리인) 공동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보안카드(전자세금계산서)로 가입

- 홈택스 누리집 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 제출

※ 본인(법인 대표자) 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 신분증 필요

● 비회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 통신

사 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서비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신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

◎ 「홈택스」 주요 서비스 내용

• 전자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25종)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세목(14종) 및 사업장현황 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등 주요 신고서류(11종)
- 전자신고 혜택 : 부가가치세(확정신고) 1만 원, 법인세(정기신고) 2만 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2만 원(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1만 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
- 이용안내 :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 (신고서 작성 방식) 홈택스에 접속한 후 직접 신고서 입력하여 제출
 - (신고서 변환 방식) 세무회계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류 검증 후 제출

• 전자납부

-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에 대한 납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유형 선택
 - ※ 납부유형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 납부결과 확인 및 납부확인서 출력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납부내역조회

• 전자고지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공동, 금융,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전자고지 신청 또는 해지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 전자고지 신청/해지
 - 전자고지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
- 유의사항
 - 전자고지를 2회 연속 미 열람 시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철회되고, 그 이후는 우편으로 발송
 - 전자고지 해지 후 전자고지 재신청은 해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신청 가능
 -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고지 사실 안내

• 민원증명

-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15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채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 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실증명(12유형)
 - ※ 모바일에서 발급 신청한 경우 발급번호로 PC에서 출력(열람) 가능하며, 거래처에서도 홈택스로 발급 가능(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원본 확인 > 발급번호로 조회)
- 신청/제출
 -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세무서류 신고 신청 안내
 - 신청 업무는 승인, 허가, 신고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이용, 첨부서류가 있는 민원의 경우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대상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소비제세 신청/제출, 휴폐업신고, 일반세무서류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휴업자)재개업신고, 납세자보호민원신청,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등
- 과세자료 전자 제출
 - 각종 과세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제출 가능한 자료
 -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지급명세서, 승용차 조건부 면세, 주류 판매기록부 등 소비제세 자료,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등
 - 자료 제출 방법
 - 작성방식 : 홈택스에 접속한 후 직접 입력하여 제출
 - 변환방식 : 세무회계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류 검증 후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매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요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수정·일괄·반복 발급, 발급 목록 조회, 건별 상세 조회, 월·분기별 목록 조회, 합계표 및 명세서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및 거래처 관리 등
 - 이용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필요
 - ※ 공인인증서 : 은행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 후 이용 가능

보안카드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후 이용 가능

- 거래상대방(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기 위한 이메일주소 사전 확보 필요

• 현금영수증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인증수단(카드,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소비자 등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인증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해야만 사용내역이 소비자에게 귀속되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영수증) 를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내려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소속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인쇄 및 내려받기(PDF)
- 자료 제공동의 : 부양가족이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 의료비·신용카드 신고센터 :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금액과 직접 수집한 금액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 간편제출하고,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요 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간편 제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03.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 안내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이용 혜택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80% 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구 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사용기간 구분	
		3~6월분	3~6월분 외
공제율	① 신용카드	30%	15%
	② 직불·선불카드	60%	30%
	③ 현금영수증	60%	3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60%	30%
	⑤ 전통시장	80%	40%
	⑥ 대중교통	80%	40%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 공제대상 금액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현금영수 증이나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를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 월 31일까지 1.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0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적용대상 업종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번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기타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특수여행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 대상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밀줄 업종은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입력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2018. 12. 31.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

료)를 부과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0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대상
2011. 1.	법인사업자
2012. 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4. 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
2019.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중이 발급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대상
2015. 7. 1.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 1. 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 1. 1.	•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 7. 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 전화 ARS(☎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 혜택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06.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 이자 · 종교인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 세 미만), 70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18 세 미만) 및 70 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2.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상단의 「세금모의계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11. 30.)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9. 1.~ 9. 15. (하반기) 다음해 3. 1.~ 3. 15.

• 신청방법

- ①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②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 ③ 홈택스: www.hometax.go.kr,
- ④ 신청도움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반기별 신청 →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15일 이내 지급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 및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환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text{상반기총급여} + (\text{상반기총급여} \div \text{근무월수}) \times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text{상반기총급여} \times 2$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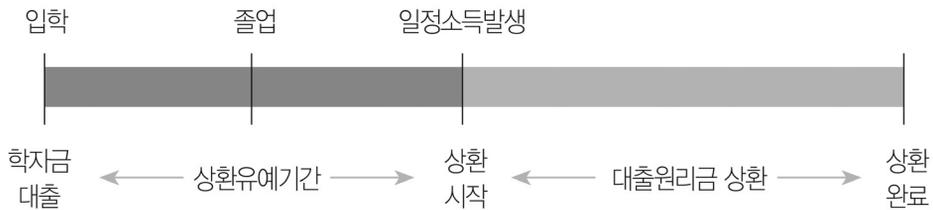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하반기 소득분	2021.3.1.~2021.3.15.	2021년 6월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귀속분 정산		2021년 9월말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2021년 상반기 소득분	2021.9.1.~2021.9.15.	2021년 12월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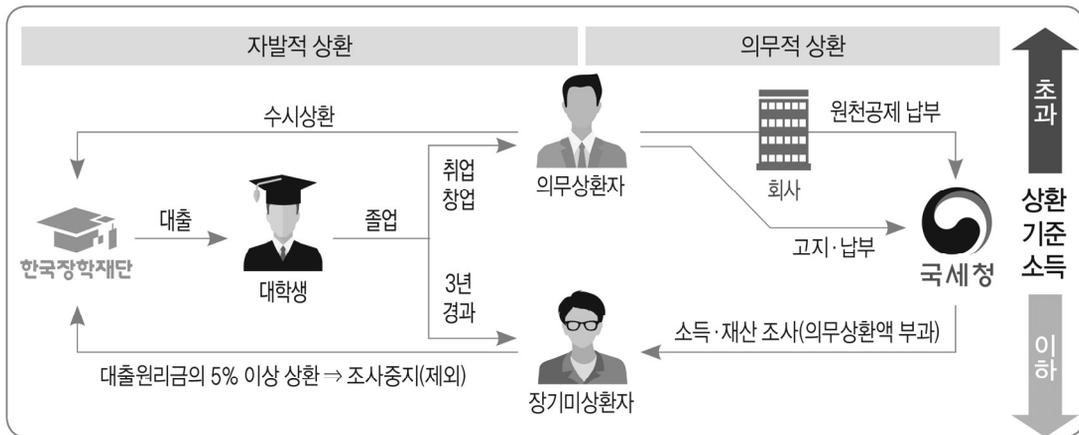
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됨



<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및 상환 구조 >



◎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2021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975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대학 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도 가능(대출당시 35세 이하)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지원구간에 관계 없이 대출이용 가능

- 성적 'C학점' 이상 이고,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종수혜 금지
-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하는 자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 원

- 생활비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 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 그 외는 정상이자 계산

- 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결정

※ 이자율: 2018. 1학기 ~ 2019. 2학기 2.2%, 2020. 1학기 2.0%, 2020. 2학기 1.85%, 2021. 1학기 1.7%

• 의무상환액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 상관없이 대출자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납부(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 불가)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¹⁾) × 20%(상환율) - 소득귀속연도의 자 발적상환액²⁾

1) 2021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413만 원(총급여 기준 2,280만 원)

2) 소득 귀속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 도로 함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021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22년 통지 시 적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너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 만 원 상환

※ 상속·증여재산에 의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은 최소부담액(36만 원) 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된 의무상환액 납부

◎ 의무상환 대상자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7월~다음해 6월)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5월) 및 고용주(6월)에게 각각 통지

- 고용주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상환금명 세서에 의하여 상환내역을 신고 및 납부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 1년분 미리 납부: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1년분) 일시 납부

- 분할납부: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
 ※ 원천공제 통지액을 미리 납부 (일시납 or 분납)하는 경우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상자임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음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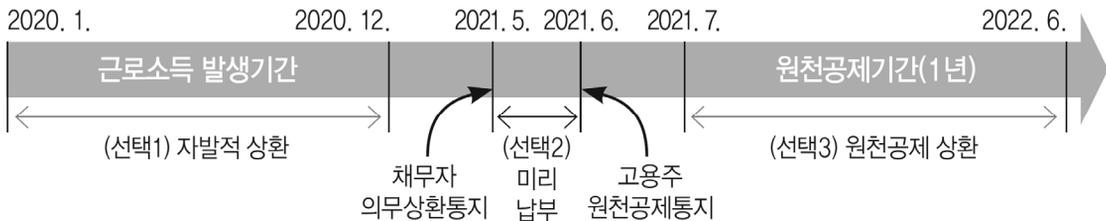
• 고지·납부 대상자

-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 채무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됨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은행창구 수납 안됨)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21: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자율상환제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 3. 13.시행)

< 의무상환액 납부방법 선택 >



◎ 상담 및 문의

- 국세상담센터 : ☎ 126번 ☞ 1번 ☞ 4번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08.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

◎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 로 연간 2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 는 신한·현대·롯데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2021. 12. 31.까지 적용 (향후 법령 개정 시 연장될 수 있음)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www.lottecard.co.kr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제휴(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www.shinhangcard.com 누리집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 / 단체 → '경차사랑카드'	www.hyundaicard.com 누리집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주유(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제한급)'
전화	1899-9955 →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	1577-0100 → 1번 카드신청 접수
방문(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신한은행영업점 신협 전국 영업점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1년까지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됨

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0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수익,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등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발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 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사업자등록번호는 변동없음)
 - 개인: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사업자등록 번호 변동)
-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과세 대상	면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중계기지·알뜰장터 임대 - 옥외광고물·ATM기 설치장소 임대 • 재활용폐자원 판매 수익 • 게시판 광고 수익 등 • 외부인 주차장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 • 공동주택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제4의3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

- 재활용폐자원 판매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 46015-2727, 1993. 11. 20.】

부녀회 노인회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활용폐지를 수집 공급하므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 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각종 임대료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심사소득 2012-0011, 2012. 4. 2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내에 광고물부착, 이동통신중계기, ATM기 설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검침수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서삼46015-10602, 2001. 10. 31.】

사업자와 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 대표자가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성실납세 지원제도 -

01.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정 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 납세담보제공 면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고지납부의 유예 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세액 5억 원 한도(「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
-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한함)

- 철도운임 할인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
- 공항 출입국 우대
 -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 국제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수상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 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보증지원우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료 10% 할인,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수상일로부터 3년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보증료율 10% 인하, 보증한도 확대(최대 50억 원) (수상일로부터 3년간)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수상일로부터 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수상일로부터 2년간)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상일로부터 1~3년간).
- 의료비 할인혜택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 협약 병원별로 우대 대상자·우대기간 및 할인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소노호텔&리조트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소속 임직원까지 제공)
 -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이용(수상일로부터 3년간)
- 전용 신용카드 발급(모든 수상자 및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
 - 주유, 의료 등에서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신한카드 발급(수상일로부터 3년간)

02.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구 분	개 인	법 인	
세금 포인트 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고지분 제외)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사용

구 분	상 세 내 용
세금포인트사용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납자 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사용)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사용)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소개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
-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을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	10~20만 원	20~30만 원	30~40만 원	40만 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5%				

◎ 쇼핑물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물」 안내 화면에서 입장하기 클릭

03.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경감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농특세를 면제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 포함).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국내 공급 시)
 - 「장애인 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수입 시)
 -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개별소비세 면세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관세 감면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 지방세 면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04.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 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고용 증가시 최대 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 원)
설비투자 지원	•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12% 세액 공제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7% (일반법인 10 ~ 17%)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대체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금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접대비 인정한도 (①+②) ① 기본금액 : 3,600만 원(일반기업 : 1,200만 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과세유예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지방세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고용유지·증대 지원	• 고용 유지시 임금감소액의 10%, 시간당임금 증가액 15%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공제 • 복지·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1인당 1천만 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 소득 50% 감면, 기술대여 소득 25% 감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0.1~0.2% (지급기한별) 세액 공제

◎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본사) 이전연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연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 그 후 3년간(2년)간 50% 감면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연도 초과액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와 해당연도 지출액의 0~2%(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중 큰 금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중견기업 8% • 설비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30%(중소기업 40%) 세액공제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신성장 사업화 시설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 (추가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3%(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2020년, 2021년 투자분은 기존 투자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 시 1만 원~750만 원 세액공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 ~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근로소득 증대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고용 증대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1200만원, 일반기업은 400~800만원 세액공제

05. 징수유예 · 납기연장 제도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 납부기한 연장 사유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 등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세무사법」 제2 조제 3 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같은 법 제 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 ① ~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유예한 날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한정)

● 징수유예 사유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의 효과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대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2019. 12. 31. 이전에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하고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직전 3년 평균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② 2020. 1. 1. ~ 2022. 12. 31. 기간 중,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가산금 제외) 5천만 원 이하

● (특례 내용)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 (신청기간) 2020. 1. 1. ~ 2023. 12. 31

06. 국선대리인 제도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 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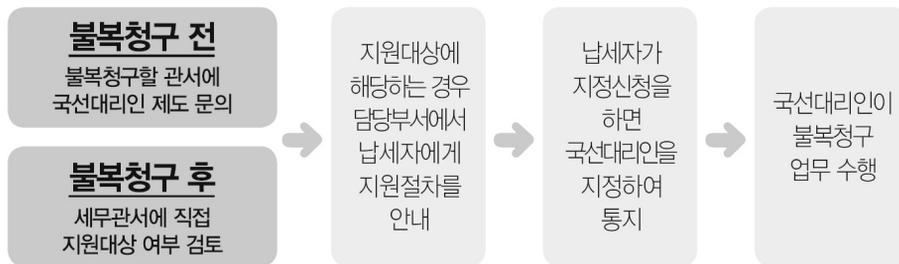
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 이의신청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07.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 · 회계사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영세납세자 지원단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납세자,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업무관리 담당직원,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126→3번으로)
-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제공되는 서비스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 (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영세납세자지원단이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

01. 납세자권리현장

◎ 납세자권리현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 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2.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 심의 대상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세 무 조 사 분 야	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재심의 ①②③
	②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③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④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
일 반 국 세 행 정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 (가장 큰 과세기간 기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 · 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 요청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03.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세금의 부과 · 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ombudsman(ombudsman) 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 ·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국세의 부과 · 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 · 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조정해드립니다.

0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란?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세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법한 세무조사를 포함)
2. 조세탈루의 형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제4호에 따른 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가.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 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6.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 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충민원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심사·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심사·심판·감사원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 불가)

◎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06. 탈세제보포상금

▶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여 '탈세는 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탈세제보란?

-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제보의 접수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서면접수 :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번없이 126번(4번 → 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되는 자료

◎ 포상금 지급액

-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2018. 1. 1. 접수분부터)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상향 기준 5~15% ⇒ 5~20%(2018. 2. 13. 접수분부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 자료
-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07.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

▶ 조세탈루 목적으로 일정 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분
 께는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위 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 신고대상 거래 유형(예시)

- ○○웨딩홀을 찾은 신혼부부는 결혼식장 예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계좌이체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표자 A와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 확인되어 이를 차명계좌로 신고
- ○○음식점 대표자 B가 단체손님 예약자에게 명함에 적힌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나, 영수증에 적힌 대표자 B와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 확인되어 이를 차명계좌로 신고
- ○○외과 실장 C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며 수술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계좌입금한 후 원장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인의 계좌로 확인되어 이를 차명계좌로 신고

◎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서 면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 신고시 포함할 내용

•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인터넷뱅킹 내역, 통장사본,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거래내용 또는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거래내용 작성 예시

• "○○년 ○○월 ○○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대금 00만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신고연도 기준 연간 5천만원 한도)

08.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기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은닉재산 신고화면 접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 상속채납자 은닉재산신고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 상속채납자 등 명단 공개 > 은닉재산 신고하기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09. 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 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2017년 보유분 (2018년 신고)까지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신고방법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

■ 신고처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방문 및 우편신고 : 지방청(성실납세지원국), 세무서(법인납세과, 재산세과)

◎ 포상금 지급

- 지급액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 (20억 원 한도)
- 지급방법 : 신고인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에 이체
- 지급제외 :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제보한 경우
 - 과태료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10. 기타 신고포상금

▶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는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 2. 2. 거래분부터 신고기한연장)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포상금 지급

- 결제·발급거부금액(현금영수증의 경우 5천 원 미만 금액 제외)의 20%(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

◎ 신고방법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 증거자료 예시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 신고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상담 / 제보 → 탈세제보 / 차명계좌 신고 등 → 타인 명의사업장 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포상금 지급

- 포 상 금 : 신고건별로 1백만 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이체
- 지급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를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 신고방법

-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신고처

-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다음 중 택일)
 - 우편제출 :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
 - 인 터 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담/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제보내용 등록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참조

◎ 포상금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 원
- 지급시기 :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